

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30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: 2015. 12. 22.

제 출 자: 광진구청장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차량 운행제한 조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주차요금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대상 주차장을 “공영주차장”에서 “노상주차장”으로 개정하고, 상위법 체계에 맞춰 조문 이동(안 제10조의4)
- 나.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상 “주민등록번호” 기재란을 “생년월일”로 개정 (안 별지 제6호서식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
 - 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 - (2) 입법예고(2015. 11. 20. ~ 12. 10.) 결과 : 의견 없음
 - (3) 규제심사 : 규제개선과제 반영

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제10조의4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공영주차장”을 “노상주차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6호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《신·구조문 대비표》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5조</u>(주차요금 미납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장치 설치)</p> <p>① 구청장은 <u>공영주차장</u> 사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,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해당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해당 차량의 운영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 할 수 있다.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	<p><u>제10조의4</u>(주차요금 미납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장치 설치)</p> <p>① ----- <u>노상주차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제2항제2호
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
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함

3. 미첨부 사유

새로운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

4. 작성자 : 교통지도과 행정8급 문금숙(450-7963)

안전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장 김봉규